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수당 등 환수〉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75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지연 · 박준태 · 강승규 · 최수진 · 이인선 · 고동진
장동혁 · 박덕흠 · 강대식 · 임태영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2. 20.

※ 의안번호 : 827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원이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수당의 환수) ① 의원이 법원의 판결(의원의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으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의원이 형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 등에는 수당,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있음¹⁾.

수당은 보수 성격의 금전으로서 매월 지급되고, 입법활동비는 입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며,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회기 중 지급하되 회의에 결석할 경우 감액함.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 수행을 위한 여행 시 지급됨.

[표-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등

구 분	근거조항	지급목적	지급성격	비고
수당*	제7조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전	급여 (매월지급)	*국회법 §163조①에 따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시 출석정지기간동안 수당 등 1/2감액 ²⁾
입법활동비	제11조	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급	지원 경비 (매월지급)	
특별활동비	제12조	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13조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	경비 (청구에 의하여 지급 등)	*정액지급경비는 정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여비	제14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시 지급		

* 기존의 세비(歲費)라는 용어는 「(구) 국회의원보수에관한 법률」 제2조 “국회의원에게 국무위원이 받는 보수와 동액의 세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에서 사용되었으나, 현행법은 세비 대신 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2) 같은 조 제2항은 제155조제8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제10호(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제11호(회의장 출입방해)로 인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에는 수당등의 1/2을 2개월 간 감액하고,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수당등을 3개월간 미지급하도록 정함.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³⁾하거나 징계⁴⁾를 받는 경우 이외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소 제기 후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국회의원으로서 지급 받았던 수당 등을 환수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유사 취지 법률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및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경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김희정·서천호·최수진·한정애

3)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의원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김기현의원안)이 있음.

그 내용은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원이 구속(서천호·최수진·김기현 의원안) 또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경우(한정애의원안) 해당 기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김희정 의원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려는 것임⁵⁾.

[표-3] 유사 취지 법률안의 주요내용

구 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법개정안 김기현의원안 (2201635)	개정안
	김희정의원안 (220160)	서천호의원안 (2201122)	최수진의원안 (2201346)	한정애의원안 (2202271)		
수당제한 사유	금고 이상 형 확정	구속	구속	공소 제기 후 구금	구속으로 회의 불출석	금고 이상 형 확정
수당제한 기간	공소 제기된 날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구속기간	구속기간	구금기간	(불분명)	공소 제기된 날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수당제한 범위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수당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	-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
적 용 령	법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경우부터	법 시행 이후 구속·구금된 경우부터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법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경우부터
운영위 심사경과	상정 (2024.8.27.) → 소위 심사 (2024.10.28.) → 대안반영 폐기 의결 (2024. 10. 31.) ※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4.11.1.)되어 현재 계류 중					운영위 회부 (2025.2.20.)

2025.5.30. 기준

5)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은 김희정의원안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이후 60일 이내 수당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동 개정안은 수당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 제한되는 수당의 범위 및 적용례 등에 대하여 김희정의원안(의안번호 220160)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의원이 형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당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수당등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국회운영위원회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4.10.28.)에서 김희정의원안을 포함한 상기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4.10.31.)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안은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경우에 해당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무죄 등 확정 판결 시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⁶⁾으로, 동 대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4.11.1.)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임.

6) 동 대안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기간 동안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미지급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은 수당등 반환의무 불이행시 강제징수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종전에 의결한 대안에 대한 법제
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및 향후 본회의 처리 경과 등을 고려하여
그 심사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14